

의안번호	제 781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78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기능 및 구성 (안 제2조, 제3조)
 -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,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자문
 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
- 위원 임기 및 회의소집 (안 제4조, 제7조)
 - 임기는 2년(한 차례만 연임 가능), 위원장이 필요한 때 회의 소집
 -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위원회 존속기한 (안 제12조)
 -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초연결·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·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도정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행계획과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
3.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 : 기획관리실장, 경제통상국장, 바이오환경국장
2. 위촉직 위원 : 연구기관, 경제단체 및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
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⑤ 위원장은 필요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(後任)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으며,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6조(위원장·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

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에게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를 제안·기획·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,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

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·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제정이유

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위원회 기능 및 구성 (안 제2조, 제3조)

-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,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자문
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

- 위원 임기 및 회의소집 (안 제4조, 제7조)

- 임기는 2년(한 차례만 연임 가능), 위원장이 필요한 때 회의 소집
-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2. 비용 발생 요인

- ‘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’ 및 태스크포스팀 회의 개최시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발생 예상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10조(수당 등)

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1인 1회당 150천원이내 수당 등 경비 지급

나. 추계 결과 : 5년간 58,500천원 [(11,700천원/년)×5년]

- 11,700천원=150천원(1인당)×26명(1회당 참석인원)×3회(년간 개최 횟수)

다. 재원조달방안 : 추경예산 반영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 김대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 입	-	-	-	-	-	-
세 출	11,700	11,700	11,700	11,700	11,700	58,500
출석수당	11,700	11,700	11,700	11,700	11,700	58,500
재원 조달	-	-	-	-	-	-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-	-	-	-	-
	지방세	-	-	-	-	-
	세외수입	-	-	-	-	-
지방채	-	-	-	-	-	-
기 금	-	-	-	-	-	-
특별회계	-	-	-	-	-	-
구·군비	-	-	-	-	-	-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-	-	-	-	-	-